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83. 9.20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로 제정하여 7차에 걸쳐 개정, 운영하여 왔으며, 급변 조례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제4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것으로 민간활동에 대한 자율역량을 세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유통중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제7호 “중도매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써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그 내용이 막연하고 혼동될 수 있는 부분으로 동조 제1호 내용으로도 충분하여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 안 제9조 제2항 “그 형태를 크게 변경하는 행위”를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로, 제3항 시설물 반환을 “지정하는 기간내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내”로 구체화하는 것과 안 제11조 시설사용의 규제, 안 제13조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안 제15조 제3항은 그 동안 유통중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던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유통중사자에게 편의와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별도 문세는 없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 제2항중 “그 형태를 크게 변경하는 행위”를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를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 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2. 불공정 거래, 환경지해, 공용시설 무단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 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부당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거래참여기간 담합 등 정상적인 가격 형성에 저해되는 행위 발견시에는 이를 중지,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제3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과 거래질서 유지 또는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産業經濟局 業務報告

最近 서울經濟 動向

'99. 3월 들어 내수와 수출이 점차 늘어나면서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IMF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

□산업생산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